

---

## | ILO 기본협약 비준 |

# ILO 기본협약 비준 위한 공익위원안 설명회

이세종 전문위원

---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12. 5.(수) 16:00,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ILO 기본협약 비준을 위한 공익위원안(이하 공익위원안)에 관한 기자단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11.20. 발표한 공익위원안에 대한 언론의 충실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는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이하 노사관계위) 위원장인 박수근 위원장(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과 공익위원 간사인 이승욱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석했고, 기자단과의 일문일답으로 진행됐다.

### 이승욱 교수

노사관계위의 목적은 ILO의 기본협약 비준을 전제로 국제노동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우리나라 법 제도와 관행을 고치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합의안 논의도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해야 한다는 것이 전제였다. 국제노동 기준과 우리나라와 법 제도, 관행이 상당히 거리감 있다는 점은 모든 전문가가 동의하는 바다. 발표한 공익위원안의 내용이 지나치게 전문적이고, ILO 기준에 대한 내용이 충실하게 포함되지 못해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 기자들과 개별적으로 전화를 많이 했는데 전체적으로 명확하게 설명드릴 기회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오늘 설명회를 개최했다.



## 공익위원 합의안 발표 후, 기사들에서 본의와 다른 오해가 있어 오늘 설명회 준비했다고 하는 데 대표적으로 의도와 다르게 기사된 부분 어떤 게 있나

이승욱 교수

우선 대부분 경제신문에서 노동계에 완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노동계에 지나치게 유리한 안이 제시된 것 아니냐는 의견들이 많았다. 하지만 공익위원안은 누구에게 유·불리한 관점으로 접근하지 않았다. 공익위원안이 제시한 기준은 국제노동기준 부합 여부다. 공익위원안이 노동계 편향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국제 노동기준이 노동계 편향적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다. 뒤집어 생각하면 그동안 우리나라 노사관계 법제도와 관행이 사용자측에 편향적으로 기울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제노동기준에 따라 다른 나라에서도 보편적으로 지키는 기준, 뿐만 아니라 FTA에서 약속한 기준, 그 기준대로 하자는 것이다. 다만 우리나라의 특수한 노사관계 현실, 다른 나라와 달리 기업별 노조 중심으로 노사관계가 형성된 점,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한 부분은 있다.

### 박수근 교수

덧붙이자면, 소방공무원의 단결권 보장에 있어서 노조가입이 가능하다는 점을 얘기한 것인데, 파업도 할 수 있다고 보도됐다. 공익위원안은 공무원이 파업할 수 있다고 한 것이 아니다.

### 이승욱 교수

기사에 따르면 ‘불이 나면 불은 누가 끄냐’ 이런 내용이 있었다. 소방관 단결권 보장의 의미는 전문가 입장에서는 노조 설립을 허용해야 한다는 원론적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진다. 하지만 기자들은 파업까지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했다. 우리나라 공무원 노조법 보면 공무원은 일체의 파업을 비롯한 쟁의행위가 금지돼있다. 노조를 허용하더라도 파업이나 쟁의행위는 당연히 할 수 없다. 이 말씀을 상세히 안 드려서 그런 오해가 생긴 것 같다.

저는 공익위원 간사로서 우리나라가 자리하고 있는 국제사회의 위상과 의미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를 해야 했다. 보도는 안 났지만 공익위원안에 보면 우리나라가 각종 FTA 체결을 하고 있고, 체결한 FTA가 16개다. 그 중 9개 FTA에서 사실상 ILO의 8개 기본협약 노동기준으로 FTA에 포함시키고 있다. 한-EU는 이명박 정부 때 협상을 시작해서 '10년에 체결하고 '15년에 발효됐다.

한-EU FTA 보면 명시적으로 EU와 한국에 대해 기본 협약 8개 비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 합의를 이명박 정부 때 이미 한 상황이다.

그런데 문제는 서명 당시에 EU 28개국은 8개 전부 비준 했는데, 우리나라는 4개만 비준한 상태였고, 전부 비준할 것을 요구했다. 문제는 '10년 정식 서명되고 '15년 전면 발효됐는데, EU 쪽에서 정식 서명된 지 8년이 경과됐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이 비준 약속을 위반하고 있다는 압력이 최근 들어 굉장히 강력하다.

대표적으로 '17년 5월18일 EU의회에서 우리나라 협약 비준에 대해 일종의 비난 결의를 공식채택 했고, 올해 10월18일 EU통상담당집행위원이 우리나라 통상교섭본부장과 면담해 FTA 위반에 항의하고, 한-EU FTA 분쟁해결 절차 개시를 정식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을 했다. 10월29일에는 한국주재 EU대사가 고용부 장관을 면담해 구체적인 핵심협약 비준과 국

회 일정을 제시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핵심협약을 미비준 상태로 지속 방치하는 문제다. 단순히 문재인 정부의 공약 이행의 여부를 떠나, 대외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FTA 위반으로 인해 상당히 중대한 상황으로 접어들 수 있단 점을 고려했다.

### **공익위원안 발표 이후 어떤 논의? 경영계 요구 관련 논의는 시작됐나?**

박수근 교수

단체교섭과 쟁의행위에 관해 노동계, 경영계 요구 사항 다 받았다. 다만, 제출한 의제 중에 5~6개 정도를 추려, 12월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내년 1월 정도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려고 하고 있다.

경영계 요구는 단협 유효기간 확대,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제외, 직장 내 점거파업 불허, 대체근로 전면허용 등이다. 노동계 주장은 교섭창구 단일화 개선, 단협 확대적용, 쟁의 행위 목적 확대 등이다.

### **경영계 요구사항도 ILO 기준에 있는 것인가? 그리고 같이 처리할 필요 있나? 아니면 협상용?**

박수근 교수

경영계가 요구하는 의제들은 대부분 ILO 기준에서 명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균형적 논의를 요구하는 국회 상황을 감안하여 단체협약과 쟁의행위 관련 의제를 조금 앞당겨 추진하는 것으로 알아 달라.

### 이승욱 교수

경영계 요구 사항은 국제노동기준에서는 명시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경영계의 요구사항은 법 개정 기회에 평소 경영계 판단하기에 불합리하다고 판단하는 요소를 추가시켜 함께 추진하자는 취지로 생각된다. 다만 테크니컬하게 그걸 여러 번 나눠 입법할 수 없으니, 같이 논의해 일괄타결 하자는데 노사정이 합의를 한 것이다.

## 비종업원 해고자가 노조 가입 시 어떤 일이 발생하나

### 이승욱 교수

첫번째로 ILO 기준부터 말씀드리면 해고자든 실업자든 조합원을 누구로 가입할 수 있다. 노조 가입은 국가가 법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고 노조가 알아서 하는 것이다. 해고자와 실업자 노조 가입도 노조가 결정한다. 국가가 개입해서 하라마라 하는 것은 안 된다. 예컨대 현대차 지부에서 받겠다면 받는 것이고, 못 받겠다고 정하면 못 받는다.

해고자 노조 가입 허용 시에 현실적으로 혼란을 초래할 것이란 것은 경영계가 우려하는 지점이다. 우리나라와 유사한 일본 사례를 봐도 노사관계에 큰 혼란은 일어나지 않고 있다. 1964년부터 허용했는데도 해고자 실직자의 기업별 노조 가입 시 실익이 노조 측에도 없고 해고자나 퇴직자 입장에서도 실익 없는 경우 대부분이어서 가입을 하지 않는다고 분석되고 있다. 단기적으로 조합장에서 해직된 자가 가입해 일시적 혼란을 있을 지라도 장기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을 것이다.

또 다른 경영계의 우려는 해고자나 퇴직자가 노조 가입 시 그들이 과격한 노조 활동으로 기업질서를 해칠까 하는 데 따른 우려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공익위원들의 제안은 전적으로 국제노동기준에 따랐다. ILO 135호 협약에 따르면 노조의 활동은 종업원이든 비종업원이든 관계없이 기업 내 활동 시에 ‘기업의 효율적 사업운동을 저해하지 않는 방법으로 해야한다’는 것이 명시돼있다.

해고자와 복직자가 기업 내 조합 활동 시 맘대로 회사 사업장을 사용자 뜻 반해서 사용하

는 것 자체가 국제노동기구 협약의 위반이다. 공익위원안에 따라 법안 만들 때 기업 외부자, 내부 조합원이라도 기업 효율적 운영과 충돌한다면 이를 방지하기 위한 합리적 보완장치 예컨대 회사 출입 시 사측에 사전통보를 하고 사용자라 허락하는 등의 보완장치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돼야 할 것이다.

### **기존 노조 가입한 게 아니라, 해고자나 실업자, 제3자로 뭉친 노조로 가입해 회사에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이승욱 교수

청년 실업자, 구직자로 구성해 노조 만들어 현대차에 단체교섭 요구한다면 현대차 입장에서는 당연히 현행 법에서는 합법적으로 거부해도 무방하다. 노조 만들었다고 현대차가 교섭에 응할 의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예컨대, 현대차 퇴직자로 구성된 노조가 만들어져 퇴직과 관련 여러 가지 퇴직금 정산이라든지 퇴직 상황에서 미해결된 문제에 대해 현대차 퇴직자 노조가 현대차에 대해 미해결된 부분 교섭 요구하면 그 경우엔 교섭 응할 의무가 있다는 일본의 법원 판례가 있다. 설령 그런 상황이더라도 현대차가 당연히 교섭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우리 판례에 따르면 퇴직자와 현대차, 또는 해고자와 현대차 구직자 현대차 사이에는 고용 관계가 없어 단체교섭은 단체협약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요구할 수 있고 근로조건 결정을 위해 할 수 있다. 퇴직자 구직자 요구는 채용 조건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근로조건과는 무관해. 현재 판례 따르면 단체교섭 거부해도 특별한 법적인 문제는 발생 않는 것으로 본다

## **해직자 퇴직자가 실익이 없어 노조 가입을 안 한다고 하지만 전교조는 법외노조 됐다는데, 노조가 나가지 않고 있다.**

이승욱 교수

전교조의 경우는 조합원 수가 4~5만 명인데 그 중 문제는 8명~9명이 해고자라고 하여 '노조아님' 통보가 된 것이다. 4~5만 명 중 1명만 가입해도 노동조합 권리를 박탈하는 건 누가 봐도 합리적인 상황은 아니다. 8명~9명의 해직자의 노조가입을 허용하더라도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에 대한 보완책으로 타임오프 제도가 나온 것으로 이해되는 데 노사가 범위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라는 공익위원안이 ILO 협약에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이승욱 교수

87호 조항은 3가지 추상적인 조항이다. 노조 설립과 가입에 국가 개입 없이 노동자가 자유롭게 결정하라, 두번째는 노조 활동을 노조가 자유롭게 조직하라, 마지막으로 노조를 설립하거나 해산할 때, 국가가 개입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기준은 ILO 안에 '전문가위원회'와 '결사의자유위원회'가 한다. 각 제소된 사안을 검토하고 결정하는 일종의 국제법원으로, 그간 판례로 형성해 온 법리가 70년 동안 쌓여있다. 그 법리를 일반적으로 ILO 국제 기준이라고 한다. 87호 정신에 비춰보면 전임자 급여 지급은 안되고, 위반하면 처벌한다는 노조법 규정도 87호 협약 위반이라는 데 의문이 없다. 그래서 이런 협약이 상충되는 상황을 해소해야 하는 데 공익위원안에서는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을 법으로 금지하는 조항은 빼고, 처벌도 원칙적으로 빼자는 것이다.

다만, 과거로 돌아갈 것 우려해 타임오프 제도는 지금까지 상당한 실효성을 거두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해 유지하되,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정하는 기구를 국가로부터 독립시켜, 노사가 자율적으로 타임오프 면제한도를 정할 수 있도록 바꾸면 ILO 요구사항 충족하면서 우리나라의 특수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절충안이라고 판단한 거다.

## 마무리 말씀

### 박수근 위원장

노사관계위 1년의 활동기간 동안 위원들간 시각 차가 있지만 우리나라 노사관계 현장 잘 못되는 것이 법을 너무 좁게 만들거나 해석해 불법과 잘못된 관행이 만연되고 있다.

이번 기회에 국제기준에 맞게 법도 고치고 관행도 바뀌, 불법을 막고자 한다. 너무 한편의 시선으로만 보지 말기를 바란다.

### 이승욱 교수

87호의 정식제목은 단결권에 관한 협약 아니고, 결사의 자유에 관한 협약이다. 결사의 자유는 노동3권과 관계없이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자유권으로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현행법을 개정하고, ILO 87호 협약 비준한다는 것은 노조에 관해 특별하게 우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노조 아닌 다른 단체, 일반 결사체와 똑같이 노조를 취급하라는 것이 ILO의 요구사항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은 단결권이라기 보다는 시민권, 자유권의 하나로 결사의 자유를 정상화 시키는 것으로 이해해 주기 바란다.